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12일, 이연희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연희 의원)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

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출산휴가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준수 등에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포함하려는 것임.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현행법 제5조에서 임신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선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2019.4.30.)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여성 과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적용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